

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위한 행정약정

2019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(이하 “한국”이라 한다)와 뉴질랜드 정부(이하 “뉴질랜드”라 한다)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12조에 따라,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의 행정약정을 체결한다.
행정약정은 각 조로 규정된다.

제 1 조 정의

1. 이 행정약정을 적용함에 있어,
 - 가. “협정” 이라 함은 2019년 10월 29일에 서명된 한국과 뉴질랜드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.
 - 나. “약정” 이라 함은 이 행정약정을 말한다.
 - 다. “연락기관” 이라 함은
 - 1) 한국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공단
 - 2) 뉴질랜드에 관하여는 이 약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뉴질랜드 정부 부처를 말한다.
2. 그리고 연락기관들은 문맥에 명시된 것처럼 유사한 복수의 의미를 가진다. 협정에서 정의된 다른 용어가 이 약정에서 사용되는 경우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.

제 2 조 서식, 서류 및 절차

1. 연락기관은 협정 및 이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, 기타 서류 및 정보의 전송 방법을 포함한 절차를 공동으로 결정한다.
2. 협정 또는 이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, 기타 서류 또는 절차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연락기관 간 협의로 결정한다.

제 3 조 청구서 처리

1. 어떠한 자가 한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, 청구서를 접수한 연락기관은 지체 없이 :
 - 가. 청구서에 접수일을 날인하고;
 - 나. 청구서의 완결성을 검사하고, 미완성이라면 청구인이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안내하며;
 - 다. 청구인의 신원을 검증하고,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초하여 청구서에 포함된 인적사항을 각 연락기관의 요건에 맞게 확인한다. 검증되는 인적사항의 종류는 양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의해 합의되며, 필요한 경우, 원본 서류의 인증된 사본을 만든다. 그리고
 - 라. 작성된 청구서, 모든 증빙서류 및 한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 또는 뉴질랜드의 근로연령거주기간을 포함한 급여에 필요한 정보를 나타내는 연락서식을 송부한다.

2. 협정에 따라 급여결정을 하는 연락기관은 연락서식을 통해 그 결정을 다른 쪽 연락기관에 통지한다.

제 4 조 정보 교환

1. 협정 제13조에 따라, 양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양 계약당사자의 각각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.
2. 각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의 요청에 따라 급여액, 사망, 주소변동 및 혼인상태의 변동을 포함하여 관련 수급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목록을 다른 쪽 계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제공한다. 세부적인 절차는 연락기관 간에 결정된다.
3.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연락기관은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법령의 변동과 관련된 정보를 각 당국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호 연락한다.

제 5 조 급여의 지급

1. 급여는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된다.
2. 사용될 환율은 각 연락기관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환율로 한다.

제 6 조 통계의 교환

연락기관은 협정에 따라 각 연락기관이 지급한 급여에 관한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. 이 통계는 급여 종류에 따른 수급권자의 수,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포함한다. 연락기관은 때때로 협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추가 통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러한 통계는 연락기관 간 합의된 서식으로 제공된다.

제 7 조 상호 지원 및 처리 기준

1. 연락기관은 협정에 따라 제출된 청구서의 처리를 위해 이 약정 제3조에 규정된 기준을 달성하는 것과 협정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협조한다.
2. 연락기관은 협정 운용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조치를 이행한다.

제 8 조 의견 불일치의 해결

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의견 불일치는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.

제 9 조
약정의 검토

권한 있는 당국은 때때로 서면으로 이 약정의 개정을 결정할 수 있다.

제 10 조
발 효

이 약정은 협정 발효일과 동일한 날에 발효하며, 협정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하다. 이 약정은 협정과 양국의 각 법령의 틀 내에서만 이행된다.

동등하게 유효한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.

대한민국의

뉴질랜드의

권한 있는 당국

권한 있는 당국

날짜: _____

날짜: _____

장소: _____

장소: _____